

[특허법 입문강의 자료]

입법과정

국가발전 위해서는 산업발전 필요하다. → 산업발전은 신규발명 공개하여 이용도모 가능하게 해야 가능하다. → 신규발명은 일정기간 모방행위 차단하여 수익성 보호해주어야 장려된다. → 일정기간 모방행위 차단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특허권 만들자. → 특허권 만들었을 때 발생가능한 부작용은?  
→ 특허법 탄생

특허법 만든 이유

특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정기간 모방행위 차단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자 vs 의무자 → 집행관(국가 사법부)

특허권 발생 및 공개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납부방법 등) ⑤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66조(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3. 발명의 명칭
4. 발명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 특허법 내용

part 1 절차총칙 → part 2 거절이유 → part 3 출원절차 → part 4 심사 : 특허청에서 특허권 받기까지의 절차

part 5 특허권, 실시권, 질권 → part 6 침해실체 → part 7 침해절차 : 특허권 실체 및 특허권 받은 후 관련된 절차

part 8 PCT출원 : 국제출원

절차법 :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때의 약속 : 요구되는 서면을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는지 등에 관한 약속

실체법 : 권리, 의무의 내용에 관한 약속

## 주요 용어정의

특허권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특허발명 실시에 대한 독점적 권리
특허발명	특허 받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청구범위	명세서 내용 중 하나
명세서	출원절차 밟을 때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
출원	특허권 또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
청구, 신청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
심사	출원발명에 거절이유가 있는지 살피는 행위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간이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성질
신규성	종래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성질
진보성	종래 공개된 것보다 더 나은 성질
실체	권리와 의무의 내용
절차	결과를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요구되는 서면 제출 + 수수료 납부로 시작)

## 특허등록원부

<b>특 허 번 호</b>	제 1168136 호
----------------	-------------

### [ 권 리 관 ]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2011년 08월 08일	출원번호	2011-0078417
	공고연월일	2012년 07월 24일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12년 07월 13일	청구범위의 항수	5
	분류기호	A61K 31/505, A61K 31/41, A61P 9/12, A61P 9/00		
	발명의 명칭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1년 08월 08일		

### [ 특 허 료 관 ]

제 01 - 03 년분 (2012.07.17 ~ 2015.07.17)	금 액	240,000 원	2012년 07월 17일 납입
제 04 - 04 년분 (2015.07.18 ~ 2016.07.17)	금 액	105,000 원 (중견기업)	2015년 06월 11일 납입
제 05 - 05 년분 (2016.07.18 ~ 2017.07.17)	금 액	105,000 원 (중견기업)	2016년 06월 10일 납입
제 06 - 06 년분 (2017.07.18 ~ 2018.07.17)	금 액	105,000 원 (중견기업)	2017년 06월 12일 납입
제 07 - 07 년분 (2018.07.18 ~ 2019.07.17)	금 액	203,000 원 (중견기업)	2018년 06월 14일 납입
제 08 - 08 년분 (2019.07.18 ~ 2020.07.17)	금 액	203,000 원 (중견기업)	2019년 06월 20일 납입
제 09 - 09 년분 (2020.07.18 ~ 2021.07.17)	금 액	203,000 원 (중견기업)	2020년 06월 29일 납입

### [ 특 허 권 자 관 ]

(최종권리자) 보령제약 주식회사 (110111-*****)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경궁로 136 (원남동)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1번	(등록권리자) 보령제약 주식회사(110111-*****)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경궁로 136 (원남동)
2012년 07월 17일 등록	

### 이하여백

#### 특허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mg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mg 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 Part 1. 절차총칙

1. 당사자(본인)
  - 가. 능력  
절차능력 - 미성년자등(3), 비법인(4), 재외자(5)
  - 나. 기타(11)
2. 대리인
  - 가. 권한  
법정대리인(3②), 임의대리인(시규5-2, 6, 7)
  - 나. 기타(7-2, 9, 10, 12, 13)
3. 서류
  - 가. 작성(시규2, 28-2, 28-4)
  - 나. 제출 - 직접, 우편, 온라인(시규3, 시규9-4, 28, 28-3)
  - 다. 송달 - 직접, 우편, 온라인, 공시송달(시규9-8, 28-5, 218, 219, 220, 령18)
4. 기간
  - 가. 계산(14)
  - 나. 연장, 단축, 변경(15)
  - 다. 추후보완(시규17, 16②, 17, 67-3, 81-3)
  - 라. 정지 - 중단(시규18-2, 8, 20, 21, 22, 24), 중지(23 / 78, 153, 164)
5. 수수료(82-84)
6. 반려/절차무효(시규11, 시규11-2, 16, 46)
7. 권리이전시 절차 속행 / 효력승계(시규7, 시규18, 18, 19)
8. 절차 취하 / 포기(시규19, 시규19-2, 215-2)

## Part 2. 거절이유

1. 출원인
  - 가. 외국인 권리능력(25)
  - 나. 무권리자출원(33①本 / 37, 38)
  - 다. 공동출원(44 / 33②)
  - 라. 특허청 직원(33①但)
  
2. 기재요건
  - 가. 발명의 설명(42③ i , 42③ ii / 42⑨, 시규21③④)
  - 나. 청구범위(42④ i , 42④ ii, 42⑧(령5), 45(령6) / 42⑥)
  
3. 발명의 성립성(2 i , 29①本) / 실용신안
  
4. 산업상 이용가능성(29①本)
  
5. 신규성, 진보성, 선원, 확대된 선원(29①각호, 29②, 36, 29③-⑦)
  
6. 불특허(32)
  
7. 신규사항추가(47②前, 52①, 52-2①, 53①)
  
8. 오역(47②後)
  
9. 조약위반

### Part 3. 출원 + SIDE절차

1. 출원절차
  - 가. 일반출원절차(42, 43)
  - 나. 정당권리자 보호절차  
정당권리자출원(34, 35, 시규31, 시규33), 특허권 이전청구(99-2)
  - 다. 분할출원절차(52)
  - 라. 분리출원절차(52-2)
  - 마. 변경출원절차(53)
2. 공지에외적용절차(30)
3. 우선권주장절차  
조약(54, 시규25), 국내(55, 56)
4. 임시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절차(42-2, 시규21⑤⑥)
5. 외국어출원절차(42-3, 시규21-2, 시규21-3)
6. 기탁절차(령2, 령3, 령4) / 핵산염기서열 등(시규21-4)
7. 명세서 또는 도면 보정절차(47)
8. 발명자 정정절차(시규28)
9. 조기공개신청절차(시규44)
10. 심사청구절차(59, 60)
11. 심사속도 관련절차  
우선심사신청(61, 령9, 령10), 특허여부결정보류신청(시규40-2), 심사유예신청(시규40-3)
12. 재심사청구절차(67-2)

**Part 4. 심사 + 공개**

1. 심사관 제척(57, 68)
2. 심사협력
  - 가. 전문기관(58, 58-2) / 전자화기관(217-2)
  - 나. 제3자 정보제공(63-2)
  - 다. 외국심사결과(63-3)
3. 심사
  - 가. 기타(시규38, 시규40)
  - 나. 거절이유통지(62, 63)
  - 다. 보정각하결정(51)
  - 라. 특허여부결정(66, 67)
4. 재심사(66-2, 66-3, 67-2)
5. 출원공개(64, 65, 221, 령19) / 등록공고(87③④) / 서류열람(216)
6. 문서반출 등(217) / 제출명령(222)
7. 국방관련출원(41, 령13-15)

## Part 5. 특허권, 실시권, 질권

### 1. 특허권

#### 가. 특허료

납부(79, 80, 81, 81-2, 81-3, 215-2, 징수규칙8)

면제 / 감면(83, 징수규칙7)

반환(84, 215)

#### 나. 공시 - 특허원부 등록(85, 87①②, 101)

#### 다. 존속기간(88) 연장

허가(89-92, 93, 95, 령7, 고시<sup>1</sup>) / 등록지연(92-2, 92-3, 92-4, 92-5, 93, 령7-2)

#### 라. 사용·수익 / 처분행위

이전(99①②), 실시권 설정·허락(99④), 질권 설정(99②) / 포기·정정(119①, 120, 136⑧, 215)

#### 마. 기타

특허증(86), 수용(106), 소멸(124), 실시보고(125), 특허표시(223, 시규121)

### 2. 실시권

#### 가. 전용(94但, 100, 101, 119②)

#### 나. 통상

허락(100④, 102①②⑤-⑦, 118, 119③)

법정 - 공평(발진법10①, 105) / 선의 산업설비 보호(81-3⑤⑥, 103, 103-2, 104, 122, 182, 183)

강제 - 비상사태(106-2, 125-2) / 재정(107-115, 125-2, 190, 191) / 이용·저촉관계(98, 138, 183)

### 3. 질권(121, 123)

---

<sup>1</sup>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 **Part 6. 침해실체**

1. 실시권
  - 가. 내용
  - 나. 제한(94①但, 98)
  
2. 배타권
  - 가. 내용  
보호범위(97, 94①本) / 직접침해행위(2) / 간접침해행위(127)
  - 나. 제한(94②, 95, 96, 81-3④, 181,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
  
3. 배타권 침해
  - 가. 민사  
조치 – 침해금지청구(126), 손해배상청구(128), 신용회복청구(131)  
입증책임경감(126-2, 128-2, 129, 130, 132)
  - 나. 형사(225, 231)
  
4. 비밀유지명령(224-3, 224-4, 224-5)
  
5. 기타 벌칙(224, 226, 226-2, 227, 228, 229, 229-2, 230) / 과태료(232)

**Part 7. 침해절차 - 심판, 소송**

1. 심판청구
  - 가. 절차(132-16, 139, 139-2, 140, 140-2, 141-153, 153-2, 154-166, 191-2)
  - 나. 거절결정불복심판(132-17, 170-172, 176)
  - 다. 정정심판(136), 정정청구
  - 라. 특허무효심판(133, 133-2), 연장등록무효심판(134), 정정무효심판(137)
  - 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135①③),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135②③)
  - 바. 통상실시권 허락심판(138)
  
2. 특허취소신청(132-2-132-15)
  
3. 재심(178-180, 184, 185)
  
4. 심결 등 취소소송(186-189)
  
5. 기타 불복(190, 191, 224-2)
  
6. 민사소송(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민사가처분

## **Part 8. PCT**

1. 수리절차(192-198, 시규90, 시규91, 시규93-2, 시규98, 시규99, 시규106, 시규106-4, 시규106-7)
2. 국제단계(198-2, 시규95-2, 시규106-11, 시규106-14, 시규106-19, 시규106-20, 시규106-23, 시규106-26, 시규106-36, 시규106-37, 시규106-39, 시규106-40, 시규106-41, 시규106-42, PCT15, PCT17, PCT18, PCT19, PCT20, PCT21, PCT22, PCT23, PCT24, PCT31, PCT33, PCT34, PCT35, PCT36, PCT37, PCT64(3)(b))
3. 진입절차(201, 203-205, PCT22, PCT23, PCT24)
4. 특례
  - 가. 출원일(199)
  - 나. 공지에외적용절차(200, 시규111)
  - 다. 서류(200-2)
  - 라. 국내우선권주장(202)
  - 마. 재외자(206, 시규116)
  - 바. 출원공개(207)
  - 사. 명세서 또는 도면 보정절차(208)
  - 아. 변경출원절차(209)
  - 자. 심사청구절차(210)
  - 차. 214조 결정(214, PCT25)
  - 카. 기타(211)